

# 수도권 및 강원도 일부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11.19. (목) 0시부터, 2주간)

구분	1단계	1.5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 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hr/>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준수사항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I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b>100인 이상 금지</b>
 스포츠 관람	50% 이내로 관중 입장	<b>30% 이내로 관중 입장</b>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b>2/3 준수</b>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b>30% 이내로 제한</b>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 I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b>4㎡당 1명</b> 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식당·카페	1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수칙은 동일, <b>50㎡ 이상의 시설로</b> 의무화 대상 확대

## | 다중이용시설(일반관리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m <sup>2</sup> 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m <sup>2</sup> 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장례식장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목욕장업		
영화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공연장		
PC방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오락실· 멀티방 등		
학원·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m <sup>2</sup> 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독서실· 스터디카페		추가 수칙 없음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추가 수칙 없음	
상점·마트· 백화점		추가 수칙 없음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